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한권으로 합격하기(제1판) 정오표

(2024년 1월 15일 발행)

P.15 법령 개정

②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2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사.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인증취소	-	-

P.108 법령 개정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2호,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

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P.109

제7조(포장방법)

내용물은 포장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P.110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 실 류	사과	2kg, 5kg, 7.5kg, 10kg
	배, 감귤	3kg, 5kg, 7.5kg, 10kg, 15kg
	복숭아, 매실, 단감, 자두, 살구, 모과	3kg, 4kg, 4.5kg, 5kg, 10kg, 15kg
	포 도	2kg, 3kg, 4kg,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채 소 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 추	5kg, 10kg
	오 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호 박	8kg, 10kg, 10~28개
	단호박	5kg, 8kg, 10kg, 4~11개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가 지	5kg, 8kg, 10kg, 50개
	토마토	2kg, 2.5kg, 4kg, 5kg, 7.5kg, 10kg, 15kg
	방울토마토, 피망	2kg, 3kg, 5kg, 10kg
	참 외	5kg, 10kg, 15kg, 20kg
	딸 기	1kg, 2kg, 8kg
	수 박	5~22kg, 1~5개
	조롱수박	5~6kg, 2~5개
	멜 론	5kg, 8kg, 2~10개
	풋옥수수	8kg, 10kg, 15kg, 20개, 30개, 40개, 50개
	풋완두콩	8kg, 20kg
	풋 콩	15kg, 20kg
	양 파	5kg, 8kg, 10kg, 12kg, 15kg, 20kg
	마 늘	1kg, 5kg, 10kg, 15kg, 20kg, 50개, 100개
	깐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대파, 쪽파	1kg, 2kg, 5kg, 10kg
	무	8~12kg, 18~20kg, 5~12개
	총각무, 비트	5kg, 10kg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당 근	10kg, 15kg, 20kg
	시금치, 들깻잎	1kg, 4kg, 8kg, 10kg, 15kg, 20kg
	결구상추	8kg
	부 추	1kg, 4kg, 5kg, 10kg, 20kg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연 근	5kg, 15kg, 20kg
	미나리	1kg, 4kg, 5kg, 10kg, 15kg
	고구마순	10kg, 20kg
	썩갓, 양미나리(샐러리), 케일	1kg, 2kg, 4kg, 10kg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8kg, 10kg,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신립초	15kg

종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갓	5kg, 10kg
	콩나물	6kg, 10kg
	달 래	8kg, 10kg
서류	감 자	2kg, 5kg, 8kg, 10kg, 15kg, 20kg
	고구마	2kg, 5kg, 8kg, 10kg, 15kg
특작류	참깨, 피땅콩	20kg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들 깨	12kg
	수 삼	10kg, 15kg, 20kg
버섯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2kg, 4kg, 6kg
	팽이버섯	5kg
	영지버섯	5kg, 10kg
곡류	쌀, 찰쌀, 현미, 보리쌀, 눌린 보리쌀, 할매, 좁쌀, 울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옥수수쌀	12kg, 20kg

※ 5kg 이하 표준거래 단위는 별도로 정한 품목 외에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P.112

가) 당도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품종)과 등급별 당도규격

품목	품종	등급	
		특	상
사과	- 후지, 화홍, 감홍, 홍로 - 홍월, 서광, 홍옥, 쓰가루(착색계) - 쓰가루(비착색계)	14 이상	12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배	- 황금, 추황, 신화, 화산, 원황 - 신고(상 10 이상), 장십랑 - 만삼길	12 이상	10 이상
		11 이상	9 이상
		10 이상	8 이상
복숭아	- 서미골드, 진미 - 찌요마루, 유명, 장호원황도, 천홍, 천중백도 - 백도, 선광, 수봉, 미백 - 포목, 창방, 대구보, 선프레, 암킹	13 이상	10 이상
		12 이상	10 이상
		11 이상	9 이상
		10 이상	8 이상
포도	- 텔라웨어, 새단, MBA, 샤인머스켓 - 거봉 - 캠벨얼리	18 이상	16 이상
		17 이상	15 이상
		14 이상	12 이상

품목	품종	등급	
		특	상
감귤	•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 온주밀감(시설), 청견, 황금향 • 온주밀감(노지)	13 이상 12 이상 11 이상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금감	• 특 - 12Bx에 미달하는 것이 5% 이하인 것 단, 10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상 - 11Bx에 미달하는 것이 5% 이하인 것 단, 9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단감	• 서촌조생, 차랑, 태추, 로망 • 부유 • 대안단감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이상 11 이상 11 이상
자두	• 포모사 • 대석조생	11 이상 10 이상	9 이상
참외		11 이상	9 이상
딸기		11 이상	9 이상
수박		11 이상	9 이상
조롱 수박		12 이상	10 이상
멜론		13 이상	11 이상

※ 당도를 표시하는 경우 등급규격은 등급별 당도 규격을 포함하여 특, 상, 보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P.115 [별표 6] 추가

[별표 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제12조 관련)

1. 과실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를 무작위 추출하고, 50과 미만은 전량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 1) 크기 구분표의 크기 호칭은 공시량 평균 무게 또는 지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공시량의 평균 크기(무게 또는 지름)를 기준으로 크기 구분표의 해당 호칭을 정하고, 그 평균 크기(무게 또는 지름)의 호칭과 비교하여 크기(무게 또는 지름)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다. 착색비율

- 1) 공시량 중에서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5과의 착색비율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 2) 금감은 공시량 전량에 대하여 등급별 착색비율에 미달하는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 3) 낱개마다 품종 고유의 색깔에 대비하여 착색 정도별 면적비율과 해당 면적별 착색비

율을 각각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 착색비율(\%)} &= (A_1 \cdot B_1 + A_2 \cdot B_2 + A_3 \cdot B_3 + \dots + A_n \cdot B_n) / 100 \\ &\quad \cdot A_n \cdot B_n / 100 \end{aligned}$$

A₁, A₂, A₃ A_n = 착색정도별 면적비율

B₁, B₂, B₃ B_n = 해당면적별 착색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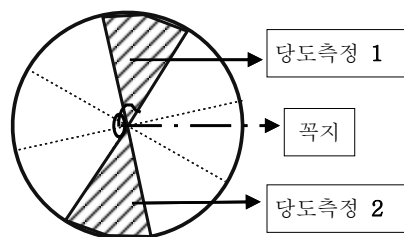
라. 당도

- 1) 대상 품목은 과실류 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의 8품목으로 한다.
-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공시량이 50개인 과실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5과,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실은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3과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 (°Bx)로 한다.
- 4) 사과, 배는 씨방, 단감은 씨, 감귤은 껍질과 씨, 복숭아, 자두는 핵을 제거한 후 이용한다.
- 5) 1과의 착즙은 씨방, 핵, 껍질, 씨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금감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포도 : 1 송이의 상·중·하에서 중간 품위의 낱알을 각각 5알씩 채취하여 착즙한다.

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자두, 감귤 : 『그림 1』 과 같이 과실의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과 그 반대쪽을 선택한 후 품목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 및 착즙부위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마. 산함량/당산비

1) 시료는 당도 측정에 이용한 과즙을 사용한다.

2) 산함량(산도) 측정은 "KS H 2188(과실·채소주스) 6.3 산도의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계에 의한 방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text{※ 당산비} = \text{당도(°Bx)} \div \text{산함량(\%)}$$

바. 결점과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과는 공시량 중에서 매과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중결점, 경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과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text{혼입률 (\%)} = \frac{\text{중결점(경결점) 개수}}{\text{공시 개수}} \times 100$$

3)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2. 채소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를 무작위 추출하고, 50과 미만은 전량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1) 마른고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 및 경결점, 심하게 구부러진 것 등을 제외하고 매개의 길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품목(품종)별 허용길이 또는 무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단, 평균 길이(무게)는 공시량 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의 품목을 제외한 채소류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과를 제외하고 전량의 무게(또는 크기)를 계측하여 무게(또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또는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다. 마른고추의 품질평가

1) 수분 : 고르기 계측용 시료중에서 30g 정도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꼭지를 제거한 후 시료분쇄기로 과피와 씨를 20매쉬(약1mm) 정도로 분쇄 혼합하여 측정한다.

2) 탈락씨 및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탈락씨와 이물을 따로 골라내어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을 구한다.

라. 마늘의 품질평가

1) 열구 : 공시료(50구)중에서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통마늘을 분류하여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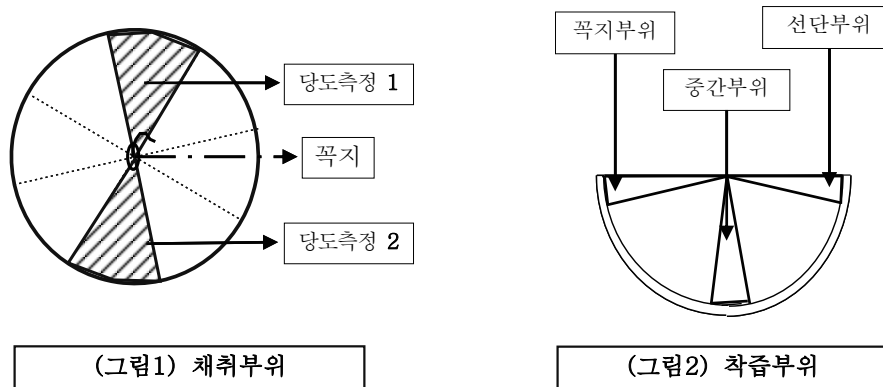
2) 쪽마늘 : 포장단위 전체에서 쪽마늘을 분리한 후 전체 무게에 대한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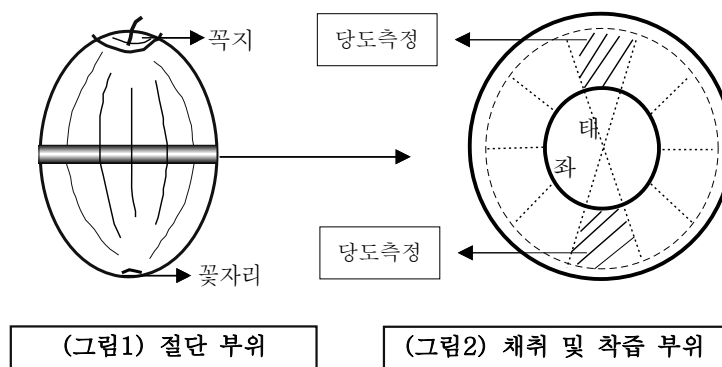
- 1) 대상품목은 과채류 중 수박, 조롱수박, 참외, 멜론, 딸기의 5품목으로 한다.
-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3) 공시량이 50개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5개,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3개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 (°Bx)로 한다.
- 4) 수박, 조롱수박은 껍질과 씨, 참외는 태좌와 씨, 멜론은 껍질, 태좌, 씨를 제거한 후 이용한다.
- 5) 1개의 착즙은 씨, 껍질, 태좌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딸기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수박, 조롱수박 : 『그림 1』과 같이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X자(대칭)로 2조각(『그림 1』참조)을 선택하여 각각 『그림 2』와 같이 3개 부위를 절단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다) 참외, 멜론 : 꼭지와 꽃자리의 중간부위를 수평으로 『그림 1』과 같이 2등분하여 각 등분별로 X자(대칭)로 2조각(『그림 2』)을 선택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바. 결점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은 매개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전량에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경결점, 중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text{혼입률 (\%)} = \frac{\text{중결점(경결점) 개수}}{\text{공시 개수}} \times 100$$

3. 서류(薯類) : 채소류에 준한다.

4. 특작류

가. 고르기(알땅콩)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중량비율을 구한다.

나. 빈 꼬투리, 가벼운 결점,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 비율을 구한다.

다. 용적중 : "1ℓ 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브라웰곡립계 등에 의한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브라웰 곡립계 계측 시 이물을 제외한 시료를 150g 균분하여 사용한다.

라. 피해립, 이종곡립, 이종피색립 : 용적중을 계측한 시료 중에서 5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수삼 낱개의 고르기 · 결점 혼입률 : 채소류에 준한다.

5. 곡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곡종별 품위 검정 순위표"에 준한다. 다만,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을 적용한다.

P.123 포도 크기구분 수정

[표 1] 크기 구분

품종 \ 호칭		2L	L	M	S
1송이의 무게(g)	샤인머스켓, 거봉, 흑보석, 자옥 등 무핵(씨없는 것)과와 유사한 품종	700이상	600이상 ~ 7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500미만
	마스캇베일리에이, 마스캇오브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등 이와 유사한 품종	600이상	500이상 ~ 6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400미만
	거봉, 흑보석, 자옥 등 유핵(씨있는 것)과와 유사한 품종	500이상	400이상 ~ 5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300미만
	캠벨얼리, 새단 등 이와 유사한 품종	450이상	350이상 ~ 450미만	300이상 ~ 350미만	300미만
	텔라웨어, 킹텔라 등 이와 유사한 품종	250이상	150이상 ~ 250미만	100이상 ~ 150미만	100미만

P.129 단감 크기구분 5단계로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50이상	200이상 ~ 250미만	165이상 ~ 200미만	142이상 ~ 165미만	142미만

P.132 참다래 크기구분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 (g)	홍 양	95이상	75이상 ~ 95미만	55이상 ~ 75미만	40이상 ~ 55미만	40미만
	스위트골드	115이상	95이상 ~ 115미만	75이상 ~ 95미만	60이상 ~ 75미만	60미만
	헤이워드, 해금	125이상	105이상 ~ 125미만	85이상 ~ 105미만	70이상 ~ 85미만	70미만
	골드윈	140이상	120이상 ~ 140미만	100이상 ~ 120미만	90이상 ~ 100미만	90미만

P.146 참외 크기구분 6단계로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 (g)	500이상	330이상 ~ 500미만	250이상 ~ 330미만	200이상 ~ 250미만	165이상 ~ 200미만	165미만

P.148 수박 크기구분 7단계로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4L	3L	2L	L	M	S	2S
1개의 무게(kg)	11이상	10이상 ~ 11미만	9이상 ~ 10미만	8이상 ~ 9미만	7이상 ~ 8미만	6이상 ~ 7미만	6미만

※ 호칭 뒤의 명칭은 유통현실에 따를 수 있음

P.153 양파 크기구분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구의 지름 (cm)	9이상	8이상 ~ 9미만	6이상 ~ 8미만	6미만
1개의 무게(g)	340이상	230이상 ~ 340미만	110이상 ~ 230미만	110미만

P.154 마늘 크기구분 수정

[표 1] 크기 구분

구분		호칭		2L	L	M	S
1개의 지름 (cm)	한지형		5.0이상	4.0이상 ~ 5.0미만	3.0이상 ~ 4.0미만	2.0이상 ~ 3.0미만	
	난지 형	남도종	5.5이상	4.5이상 ~ 5.5미만	4.0이상 ~ 4.5미만	3.5이상 ~ 4.0미만	
		대서종	6.0이상	5.0이상 ~ 6.0미만	4.0이상 ~ 5.0미만	3.5이상 ~ 4.0미만	

※ 크기는 마늘통의 최대 지름을 말한다.

P.160 비트 품목 추가

농산물 표준규격

비트

[규격번호 : 3091]

I.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비트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II. 등급 규격

등급\항목	특	상	보통
①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20% 이하인 것 단, 크기구분표의 해당 크기에서 1단계를 초과할 수 없음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② 신선도	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뛰어난 것	손으로 만져 단단한 정도가 적당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③ 손질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히 건조된 것	흙, 줄기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적당히 건조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⑤ 중결점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변질된 것은 포함할 수 없음)
⑥ 경결점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1] 크기 구분

호칭 구분	2L	L	M	S
1개의 무게(g)	600이상	500이상 ~ 6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400미만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변질 : 비트 표면 및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충해 : 병해, 충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 등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모양 : 열개된 것, 모양이 심히 불량한 것

㉤ 기타 :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 ② 정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 병충해가 외피에 그친 것
 -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P.249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1개의 무게(g)	250이상	200이상~ 250미만	165이상~ 200미만	142이상~ 165미만	142미만

P.253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1구의 지름 (cm)	9이상	8이상~9미만	6이상~8미만	6미만
1개의 무게(g)	340이상	230이상~340미만	110이상~230미만	110미만

P.266

[표 1] 크기 구분

품 종 \ 호 칭		2L	L	M	S
1송이의 무게(g)	샤인머스켓, 거봉, 흑보석, 자 옥 등 무핵(씨없는 것)과와 유 사한 품종	700이상	600이상~ 700미만	500이상~ 600미만	500미만
	마스캇베일리에이, 마스캇오브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등 이 와 유사한 품종	600이상	500이상~ 600미만	400이상~ 500미만	400미만
	거봉, 흑보석, 자옥 등 유핵(씨 있는 것)과와 유사한 품종	500이상	400이상~ 500미만	300이상~ 400미만	300미만
	캠벨얼리, 새단 등 이와 유사 한 품종	450이상	350이상~ 450미만	300이상~ 350미만	300미만
	텔라웨어, 킹델라 등 이와 유 사한 품종	250이상	150이상~ 250미만	100이상~ 150미만	100미만

P.273

[표 1] 크기 구분

구분 \ 호칭	2L	L	M	S	2S	3S
1개의 무게 (g)	500이상	330이상 ~ 500미만	250이상 ~ 330미만	200이상 ~ 250미만	165이상 ~ 200미만	165미만

P.297 17번 정답 수정

① 4 → 5 ② 0 ③ 1

④ (2.7kg 4개), (2.3kg 4개), (2.3kg 4개), (1.9kg 4개), **(1.5kg 4개)**

P.306 14번 정답 수정

① 보통 → 상

② ~ 무게 다른 것의 비율 : $1,490/3,510 = 42.45\%$ → $1,490/5,000 = 29.8\%$ 로

"상" 기준인 30% 이하 충족하여 "상"

P.310 16번 정답 수정

① 상 ② 6

③ 개화정도 "상", 경결점 "상"에 해당하지만 중결점 5% 이하 "보통"에 미치지 못하여 표준규격 품 출하가 안 됨

경결점 : 9분으로(9/200) 4.5% "상"기준 5% 이하에 해당

중결점 : 12 → 11분으로($12/200$) → ($11/200$) 6% → 5.5% "보통"기준 5% 이하에 해당하지 않음

P.311 17번 정답 수정

① 상 → 특 ② 상

③ 갖의 색깔과 신선도는 "특"에 해당하지만 날개의 고르기 10.5% → 9.5% 로 "상" 기준 20% 이하 → 특 기준 10% 이하에 해당하고, 피해품 비율 6.5%로 "상" 기준 10%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판정 "상"

P.336 6번 정답 검토 후 수정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정답이 틀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농도이산화탄소"로 정답을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보입니다.

P.351 6번 정답 수정

① 상대습도가 낮아질수록 → 높아질수록 감소하고

P.351 6번 정답 추가

정답 : ④ 오이 > ② 시금치 > ① 셀러리 > ③ 토마토

P.370 15번 정답 수정

"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보통"으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 ① 특 ② 상 ③ 보통 → 상 ④ 보통 → 상
- ⑤ 크기의 고르기 특, 개화정도 상, 경결점 보통 → 상 5% 이하로 종합판정은 보통 → 상
- ① 크기의 고르기 : 모두 3급으로 크기 구분표 [표 1]에서 크기가 다른 것이 없는 것(특)
- ② 개화정도 : 스탠다드 : 꽃봉오리가 2/5 정도 개화된 것(상)
- ③ 경결점 : 90본 중 경결점 4본(4.4%, 보통 → 상)
- ④ 종합판정 : 보통 → 상
- ⑤ 크기의 고르기 특, 개화정도 상, 경결점 보통 → 상 5% 이하로 종합판정은 보통 → 상

P.375 18번 정답 수정

- ① 상 ② 특 → 상 ③
- ① 날개 고르기 : $7/50 = 14\%$ (상)
- ② 결점과 : 경결점 $2/50 = 4\%$ (특) → ② 종합판정 등급 : 상
- ③ 이유 : 날개의 고르기 항목이 14%로 "상" 등급기준의 20% 이하에 해당함